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1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 강준현 • 윤준병 • 박민규

박정현 · 서영석 · 이광희

송재봉 • 맹성규 • 정태호

민병덕 · 김교흥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 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 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(해당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가 최초로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 인 경우에 한정한다)
- 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)	제30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	2
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. 다만,	
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	
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	
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	
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
	수에 드는 비용(해당 공동주
	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
	로 하는 소가 최초로 제기되
	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
	<u>한정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4호에
	따른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
	사용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
	호에 따른 소송의 판결이 확정
	된 경우 그 판결에 따라 확정
	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
	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
과 같음)